

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 례 안

(8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조례명	쪽수
2023-162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1
2023-163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구교육과)	9
2023-164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13
2023-165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환경과)	19
2023-166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설교통과)	23
2023-167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	35
2023-168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농업축산과)	39
2023-169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업기술과)	41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6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민간부문의 의견청취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특성과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치경찰사무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함(안 제2조·제4조·제6조·제14조)

나. 거창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신설함

- 1) 설치·기능을 정함(안 제8조)
- 2) 구성·임기·해촉을 정함(안 제9조~제11조)
- 3) 회의·운영을 정함(안 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130조
-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1. 1.~11.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6조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4조(중전 제8조)제1항 중 “구성·운영해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계)장 각”을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장 또는 계장 각각”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
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거창군·거창경찰서 및 거창교육지원청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기관·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회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담당 팀장 또는 계장 각각 1명씩 협의회의 간사로 둔다.

- ② 협의회는 안전의 사전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치안,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분과를 둘 수 있다.
-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u>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u>따른다.</u>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u>다른 법령이나 조례에</u>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u>다른 조례에</u>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u>범위 내에서</u>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치안관련 안전 시설 운영, 자율방범대 등 치안 협력 단체 및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 분야 사업 2.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3.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4.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5.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u>범위에서</u>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치안관련 안전 시설 운영, 자율방범대 등 치안 협력 단체 및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 분야 사업 2.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3.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4.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5.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6.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및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 등 분야 사업
7. 지역치안 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행사, 홍보, 회의 등 분야 사업
8.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및 거창경찰서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 간사는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계)장 각 1명씩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6.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및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 등 분야 사업
7. 지역치안 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행사, 홍보, 회의 등 분야 사업
8.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4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장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및 거창경찰서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 간사는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장 또는 계장 각각 1명씩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
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신 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거창군·거창경찰서 및 거창교육지원청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기관·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신 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12조(협회의회의 회의) ① 협회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협회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3조(협회의의 운영) ①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담당 팀장 또는 계장 각각 1명씩 협회의의 간사로 둔다. ② 협회의는 안전의 사전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치안,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분과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6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경상남도교육청 쇄신안에 따라 행복교육지구사업이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교육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함(안 제명, 제1조~제4조)

- 1)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거창군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 행복교육지구 ⇒ 미래교육지구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1. 16.~11. 2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제1항제5호 중 “행복교육지구”를 “미래교육지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행복교육지구</u>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행복교육지구</u>”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을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과 협력하여 <u>행복교육지구</u> 교육협력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사업범위 및 비용분담) ①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학교와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운영 활성화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	<u>거창군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미래교육지구</u>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미래교육지구</u>”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을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과 협력하여 <u>미래교육지구</u> 교육협력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사업범위 및 비용분담) ①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학교와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운영 활성화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

육체험활동 지원 4.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5. 그 밖에 <u>행복교육지구</u> 교육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업무협약에 따라 군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조정·분담한다.	육체험활동 지원 4.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5. 그 밖에 <u>미래교육지구</u> 교육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업무협약에 따라 군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조정·분담한다.
---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6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의 세부기준을 현행화하고 인용 법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체적이고 변경 가능한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의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위임(안 제6조·제7조)

1) 시장인원, 시장시기 등

나. 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 법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2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19.~11. 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 제3항) 중 “제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현재”를 “제조업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상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상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 중 “이노비즈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의2제1항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 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이노비즈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6조(최고경영인상)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군수가 정하며,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③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u>제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현재</u> 5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최고근로인상) ① 군수는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근로자를 발굴하여 거창군 최고근로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군수가 정하며, <u>군민의 날에 시상한다.</u> ③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u>제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서</u> 같은 업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현행과 같음)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6조(최고경영인상)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상의 세부 기준은 <u>규칙으로 정한다.</u> ②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u>제조업체 중</u> 5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최고근로인상) ① 군수는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근로자를 발굴하여 거창군 최고근로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상의 세부 기준은 <u>규칙으로 정한다.</u> ②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중 분야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4조(이자 지원) ① (생략)

1.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또는 공유재산인 공장용지에 입주하면서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5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3. 임대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생략)

제15조(지원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제14조의 지원은 이노비즈기업 또는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제16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군수는 군의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의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하여는 구매 및 판로지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4조(이자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또는 공유재산인 공장용지에 입주하면서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5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3. 임대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원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제14조의 지원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제16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군수는 군의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의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하여는 구매 및 판로지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시장개척 지원) ① 군수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이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하여 컨설팅 및 마케팅을 받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시장개척 지원) ① 군수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이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하여 컨설팅 및 마케팅을 받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16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그 설치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줄여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정함(안 제5조)
 -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에 가정용 감량기기 1대 지원
- 다. 감량기기 설치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기준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라. 보조금 신청, 반환 등을 정함(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 나.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5조
- 다. 예산조치: 2024년도 40백만원 확보예정
- 라.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마.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1. 1.~11.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하거나 건조 또는 발효시켜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가 감량기기를 설치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세대 1대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기준) 보조금 지원대상 감량기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일 것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전기안전 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일 것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기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감량기기로 처리된 상태로 배출할 것
2.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량기기 설치 후 감량기기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계속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감량기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나. 관련 조문: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4)	2차연도 (2025)	3차연도 (2026)	4차연도 (2027)	5차연도 (2028)	합계
군비	40	40	40	40	40	200

3. 관련 의견

가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통해 처리비용을 절약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도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40백만원

- 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50퍼센트, 최대 40만원 한도
나. 가정용 감량기 400,000원 × 100가구 = 40백만원

작성자 환경과장 김 성 남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6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 이동지원센터 기능 등을 정하여 거창군에 사는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기준을 개선함(안 제6조·제7조·제13조)

- 1) 운행시간 확대: 매일 24시간
- 2) 이용대상 확대: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급~3급,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등
- 3) 운행지역 확대: 군 관할, 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모든 시·군, 경상남도·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
- 4) 군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의 왕복이용 요건을 정함

나. 이동지원센터 기능·운영을 정함(안 제14조·제15조)

다. 인용법 조문, 법령 재기재 등을 정비함(안 제8조·제9조·제16조, 현행 제15조,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4조의4·제14조의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899,766천원(국비215,500, 군비684,266)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0. 27.~11.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를 “제13조·제16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6조제2항제2호”를 “제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교통수단등”을 “제5항에 따른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
- ⑤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용대상자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판정자. 다만,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자는 휠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4.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군 관할구역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 관할구역 밖까지 왕복이용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 목적에 한정
2. 최대 2시간 대기 원칙. 다만,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접수해야 함

제8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1. 군 관할구역
2. 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모든 시·군
3.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종전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인권
4. 교통약자서비스 및 친절교육
5.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필요시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등에게도 제1항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의 구분란 제1호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을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3호”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용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
②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u>이동지원센터</u> 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u>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u> 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⑥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대상자)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신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8조(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⑤ (생략)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생략)

제9조(이용기간) 제8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제7조(이용대상자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판정자. 다만,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자는 휠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임신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4.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군 관할구역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 관할구역 밖까지 왕복이용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 목적에 한정
2. 최대 2시간 대기 원칙. 다만,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접수해야 함

제8조(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⑤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이용기간) 제8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1 제2호가목의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지원 기간

나. 별표 1 제2호나목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한 기간

제13조(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군 관할지역과 인접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 3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1 제2호가목의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지원 기간

나. 별표 1 제2호나목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한 기간

제13조(운행 지역) ①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1. 군 관할구역

2. 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모든 시·군

3.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 3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법령 및 정책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인권
4. 교통약자서비스 및 친절교육
5.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필요시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들에게도 제1항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특별교통수단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제8조 관련)

구분	제출서류
1.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가. 중증보행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다만, 거주지 읍·면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 생략 가능하다.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다.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라. 임산부에 해당하는 사람: 임신진단서(확인서)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마.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여부와 이용계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증가에 따른 차량 구입비 지원
- 2)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 지원

나. 관련조문

-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안 제6조)
-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위탁(안 제15조·제1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국비	215,500	123,500	123,500	123,500	123,500	709,500
군비	684,266	401,760	428,023	455,596	484,550	2,454,195
합계	899,766	525,260	551,523	579,096	608,050	3,163,695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4년)

1.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지원: 184,000천원(국92,000. 군92,000)
2. 이동지원센터 등 운영 지원: 715,766천원

작성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6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대한건축사협회 거창 지역 건축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지도원의 자격 요건과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지도원 자격 요건 완화함(안 제33조)

나. 법령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함(안 제41조)

1) 높이 9미터 이하 또는 9미터 초과 건축물

⇒ 높이 10미터 이하 또는 10미터 초과 건축물

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완화함(안 별표 3)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삭 제>
바. 그 밖의 건축물 (단독주택 및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1미터 이상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건축법」 제37조·제58조·제61조

2)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80조의2·제86조·별표2

3) 「민법」 제24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완화함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30.~11.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건축직”을 “시설 직렬”로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기사”를 “건축산업기사”로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6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41조 조 제목 중 “높이제한”을 “높이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각 호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9미터”를 “10미터”로 한다.

별표 3 제1호바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지도원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에 따라 새로 건축지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u>3년</u>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u>5년</u>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u>5년</u>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②~④ (생략)	제3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u>시설 직렬</u> 공무원으로서 <u>2년</u>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u>3년</u>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u>건축산업기사 이상</u> 자격소지자로서 <u>4년</u>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u>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u> 6. <u>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u> 7. <u>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6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 ②~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u>높이 9미터</u>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2. <u>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u>: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②~④ (생략)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u>높이 10미터</u>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2. <u>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u>: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②~④ (현행과 같음)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23-16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에 따라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군 자체 사업으로 2019년까지 추진되었으나,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 매매혼 장려 비판 등 논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로 2020년부터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1. 16.~11.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거창군 조례제 호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3-16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생산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신축함에 따라 종합분석실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 영농 지원으로 거창군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분석실 설치·운영, 이용대상을 정함(안 제3조·제4조·제9조)

- 1) 소장에게 분석실 운영·관리업무 위임, 수수료 관련 제외
- 2) 군에 주민등록 및 경작지를 둔 농업인 이용원칙, 공익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등 이용 가능

다. 분석의 의뢰·제한·활용, 시료의 보관 및 폐기를 정함(안 제5조~제8조)

라. 분석 수수료 및 감면을 정함(안 제9조, 별표 1, 별표 2)

- 1) 농경지 토양성분, 퇴비·액비 성분, 농업용수 분석: 무료
- 2)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군 농업인 1점 10,000원, 1년 60,000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17조·제156조·제161조
-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115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23.~11.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종합분석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거창군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석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에 의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퇴비·액비”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 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분석 기능을 갖춘 분석실을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총칭하여 분석실이라 한다.

1. 출하(出荷)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2. 농경지 토양성분
3. 퇴비·액비 성분
4. 농업용수

② 군수는 분석실의 운영·관리업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4조(이용대상) 분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거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뢰 등)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공문·팩스·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분석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외 다른 용도의 증거나 확인자료, 피해 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될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7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 ①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의뢰목적 외의 용도로 분석 결과를 활용 할 수 없으며,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경우에는 분석결과 통지서 또는 성적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분석결과 통지서의 발급을 취소 할 수 있다.

제8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에 한정하여 제출된 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한다.

제9조(분석 수수료) ① 군수는 농경지 토양성분, 퇴비·액비 성분, 농업용수의 분석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별표 1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제9조 관련)

구분	수수료(원)	기준
1. 거창군 농업인	가. 1점 10,000 나. 1년 60,000	작물당 부과 연회비
2. 기관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	1점 348,000	작물당 부과

[별표 2]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 감면기준(제9조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1.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푸드 인증 신청을 하려는 농업인 2.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령농업인, 여성농 업인 등	100분의 50
1.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푸드 인증을 받은 농업인 2.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 참여 농업인 3. 3무(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가 없는 것을 말한다)농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4.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 으로 정하는 경우	면제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종합분석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약, 소모품 확보 및 장비 유지관리 등

나. 관련 조문: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 출	1차연도 (24년)	2차연도 (25년)	3차연도 (26년)	4차연도 (27년)	5차연도 (28년)	합계
군 비	115	115	115	115	115	575

작성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